공고 제 17 호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7월 23일

북가좌제1동장 ㅇ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**	김** 1973-10-12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불광천길	거주불명등록이전 2024-07-23